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4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반석기초이앤씨(주)(문형록) ② 반석건설기술(주)(문형록)  
③ (주)반도건설(박현일)

나. 전화번호 : ① 031-577-1673 ② 02-881-5820 ③ 02-3011-2717

2. 명칭 : 폴리올레핀계 수지가 첨가된 고밀도 폴리우레탄계 발포조성물을 이용한 공장바닥 침하복원 공법(스마트 지오킴 공법)

####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기초 / 기초 보강,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침하된 공장바닥의 하부 지반에 고밀도 폴리우레탄계 발포조성물에 폴리올레핀계 수지를 첨가하여 지반에 함유된 수분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한 주입재를 비전인식시스템을 적용해 계측된 침하량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복원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입하여 주입재의 팽창압에 의해 침하된 공장바닥을 복원하는 공법이다.

<범위>

고밀도 폴리우레탄계 발포조성물에 폴리올레핀계 수지를 첨가한 주입재를 비전인식시스템을 적용해 계측된 침하량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복원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지반에 주입하여 팽창압으로 침하된 공장바닥을 복원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49호

「주택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2. 지정기간 : 2020. 12. 18.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정일자	지정지역
2017. 8. 3.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sup>주1)</sup>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020. 6. 19.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sup>주2)</sup>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0. 12. 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sup>주3)</sup>

주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2)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대산면 제외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50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릉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